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3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의과대학 전임교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자, 전공의 교육과 연구 등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, 의과대학 전임교원의 부족 현상 심화로 의료시스템의 핵심인 대학 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백 발생을 초래함

또한, 외과·심장혈관흉부외과·산부인과·소아청소년과 등은 전문의의 구인난이 심각하여, 의과대학 전임교원 채용도 어려운 실정임

특히, 지방 의과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·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본교 출신이 아닌 경우 의과대학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며, 특정대학 출신 2/3 초과 제한 규정으로 인해 더욱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/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하여 특정대학 출신 2/3 초과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을 위해 단서를 추가함(안 제4조의 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협의 예정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1항 단서 중 “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
2.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, 「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및 「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, 치과의사전문의 및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채용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3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	제4조의3(대학교원의 신규채용)
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1. <u>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</u> <u>학에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</u> <u>전공분야와 다른 경우</u>
<신 설>	2. 「 <u>전문직의 수련 및 자격 인</u> <u>정 등에 관한 규정</u> 」 제3조, 「 <u>치과의사전문직의 수련 및</u> <u>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</u> 」 제3조 및 「 <u>한의사전문직의</u> <u>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</u>

② ~ ⑥ (생략)	<u>규정」 제3조에 따른 전문과 목의 전문의, 치과의사전문 의 및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 정을 받은 사람을 지원자격 으로 하여 채용되는 경우</u>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38, 6940